

#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고광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8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 의 자: 고광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옥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 
김현기, 김형재, 김혜영,  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 
박영한, 서상열, 신동원,  
유만희, 유정희, 이성배,  
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  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25년 9월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는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면서, 그 재원 중 하나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납부하는 이익배당금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, 두 조례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공사의 결산이익금 중 일부를 종전의 ‘시 일반회계’가 아닌 ‘주택진흥기금’에 납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의 이익이 시민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의 결산이익금 처리 시 납입 대상을 종전 ‘시 일반회계’에서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‘주택진흥기금’으로 변경함(안 제30조제1항제4호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등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택진흥기금에 납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0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                    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                    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                     이를 처리한다.</p> <p>1. ~ 3. (생   략)</p> <p>4. <u>시 일반회계에 납입</u></p> <p>5. (생   략)</p> <p>② · ③ (생   략)</p>	<p>제30조(손익금의 처리) ①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                      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                      른 주택진흥기금에 납입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0조(손익금의 처리)제1항 제4호를 개정(시 일반회계에 납입 → 주택진흥기금에 납입)하여 공사의 결산이익금 중 일부를 주택진흥기금에 납입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 분석관	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